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0. . . (제 회)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조명래 (환경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폐기물의 부적정 처리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6614호, 2019. 11. 26. 공포, 2020. 5. 27.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조항을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 유효기간 설정(안 제10조의2)

폐기물 수집·운반업은 3년, 폐기물 처분업 및 재활용업은 5년으로 적합성 확인 유효기간을 규정하고, 우수업체에 대하여는 해당 적합성 확인 유효기간을 2년 더 연장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나. 의료폐기물 처리 특례의 적용범위 규정(안 제10조의3)

의료폐기물의 처리가 어려운 비상상황 발생 시 예외적으로 지정폐기물 처분업체를 통해 처리할 수 있는 의료폐기물의 범위를 일반의료폐기물에 한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다. 폐기물처리업의 결격사유 명시(안 제10조의4)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1천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를 폐기물처리업의 결격사유로 명시하려는 것임.

라.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계산방법 등(안 제11조)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시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마.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안 제23조의5)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의 대상자 또는 범위를 결정하기 위한 행정청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세부운영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바.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의 지정 범위(안 제23조의6)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한국환경공단과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사.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의 계산방법 등(안 제23조의7)

폐기물을 부적정 처리한 자를 대상으로 한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부적정처리이익과 폐기물의 제거 및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산출하는 구체적인 계산방법을 규정하려는 것임.

아. 국고보조의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 요청 근거 마련(안 제35조의2)

환경부장관은 원활한 국고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에 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검토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에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적합성 확인 유효기간) 법 제2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적합성확인 유효기간”이란 별표 5의3과 같다.

제10조의3(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 적용범위) 법 제25조의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폐기물”이란 별표 2 제3호의 일반의료폐기물을 말한다.

제10조의4(결격 사유) 법 제26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금형”이란 1천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말한다.

제11조제1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2항) 본문 중 “제1항”을 “법 제28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1억원”을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으로 한다.

- ① 법 제2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해당 폐기물처리업자의 영업정지 대상인 폐기물처리업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 초일 현재 사업을

시작한지 3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업 시작 후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며,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위반행위를 한 날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영업을 중단하는 등의 사유로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2. 재해 등으로 인하여 매출액 산정자료가 소멸되거나 훼손되어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제23조의5부터 제23조의7까지 및 제35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5(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은 폐기물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환경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폐기물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변호사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4. 관계 공무원

5.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위원회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자문사항을 전문적으로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한국환경공단에 자문과 관련된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3조의6(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의 지정 등) 법 제48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환경공단

2. 그 밖에 폐기물 적정처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제23조의7(과징금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8조의5제1항에 따른 부적정 처리이익은 부적정처리폐기물의 양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처리방법별 처리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48조의5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제거 및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은 부적정처리폐기물을 제거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토지 등의 변형을 원상회복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으로 한다. 다만, 법 제48조의5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부적정처리폐기물을 제거하고 원상회복한 경우는 제외한다.

③ 법 제48조의5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와 납부 절차에 관하여는 제11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본다.

제35조의2(국고보조의 검토) 환경부장관은 법 제56조에 따른 국고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에 기술적 사항에 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제37조제1항제2호자목 중 “법 제48조”를 “법 제4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호 차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법 제48조의5에 따른 과징금 처분

카. 법 제49조제1항부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대집행(代執行) 및 비용징수

제37조제1항제3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신청 및 신고의 접수, 허가, 신고의 수리, 통보

제37조제2항제2호바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사목부터 타목까지를 각각 자목부터 하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 다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마목부터 사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 라목, 아목, 거목 및 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법 제25조의3제1항·제2항·제5항에 따른 확인, 신청의 접수 및 통보, 추가 자료 제출 및 필요한 조치의 요구

라. 법 제25조의4에 따른 처분

아.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신청 및 신고의 접수, 허가, 신고의 수리, 통보

거. 법 제47조의2에 따른 반입정지명령

너. 법 제48조의4제2항에 따른 통보

제37조제2항제3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신청 및 신고의 접수, 허가, 신고의 수리, 통보

제37조제3항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법 제30조의2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및 그 기관에 대한 지정서 발급

나.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변경지정

다. 법 제30조의2제6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정기점검

라. 법 제30조의2제7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업무정지 명령 및 그 지정의 취소

제38조의2제7호 중 “법 제33조제3항에”를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으로, “신고”를 “허가 및 신고”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법 제25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 확인에 관한 사무

별표 3 제3호 다목1)가)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가)에 (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1일 재활용능력이 100킬로그램 이상 200킬로그램 미만인 음식물류 폐기물 부속시설은 제외한다.

별표 5의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6의 제목 중 “(제11조 관련)”을 “(제11조제3항 관련)”으로 하고, 같은 표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위 반 행 위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1개월	3개월	6개월
1. 법 제13조 또는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	매출액의 2/100	매출액의 3/100	매출액의 5/100
2. 법 제13조의5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매출액의 3/100	매출액의 5/100
3. 법 제14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매출액의 2/100	매출액의 3/100	매출액의 5/100
4. 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법 제45조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매출액의 2/100	매출액의 3/100	매출액의 5/100

입력하지 않은 경우			
5. 법 제1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유해성 정보자료를 게시하지 않거나 비치하지 않은 경우	매출액의 2/100	매출액의 3/100	매출액의 5/100
6.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반 중에 서류 등을 지니지 아니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이 요구하여도 인계 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경우	매출액의 2/100	매출액의 3/100	-
7.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경우	매출액의 2/100	매출액의 3/100	매출액의 5/100
8. 법 제25조제7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매출액의 2/100	매출액의 3/100	매출액의 5/100
9. 법 제25조제8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	매출액의 3/100	매출액의 5/100
10. 법 제25조제9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다만,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에 한정한다.	매출액의 2/100	매출액의 3/100	매출액의 5/100
11. 법 제25조제10항을 위반하여 별도로 수집·운반·처분하는 시설·장비 및 사업장을 설치·운영하지 않은 경우	-	매출액의 3/100	매출액의 5/100
12. 법 제25조제1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않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허가사항이나 신고사항을 변경한 경우	매출액의 2/100	매출액의 3/100	매출액의 5/100
13. 법 제30조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적합판정을 받지 않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한 경우	-	매출액의 3/100	매출액의 5/100
14.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에 맞지 않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한 경우	매출액의 2/100	매출액의 3/100	매출액의 5/100

15.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이나 사용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매출액의 3/100	매출액의 5/100
16. 법 제31조제7항에 따른 측정명령이나 조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매출액의 3/100	매출액의 5/100
17. 법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를 위한 허가신청을 하지 않거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	매출액의 3/100	매출액의 5/100
18.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승계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경우	매출액의 2/100	-	-
19. 법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부를 기록하지 않거나 이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매출액의 2/100	매출액의 3/100	매출액의 5/100
20. 법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장부에 기록하고 보존해야 하는 폐기물의 발생·배출·처리상황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매출액의 2/100	매출액의 3/100	매출액의 5/100
21.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이행 보증금을 사전에 적립하지 않은 경우	매출액의 2/100	매출액의 3/100	매출액의 5/10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3항제4호의2 개정규정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부과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폐기물처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제11조, 제11조의2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5의3]

폐기물처리업 업종별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제10조의2 관련)

1. 2020년 5월 27일부터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의 업종별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다.

업종	적합성확인 유효기간
수집·운반업	최초 적합성 확인은 최초로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후부터는 적합성확인을 받은 날부터 3년
중간처분업	최초 적합성 확인은 최초로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후부터는 적합성확인을 받은 날부터 5년
최종처분업	
종합처분업	
중간재활용업	
최종재활용업	
종합재활용업	

2. 2020년 5월 27일 이전에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의 업종별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다.

업종	적합성확인 유효기간
수집·운반업	최초 적합성 확인은 이 영이 시행된 날부터 3년, 이후부터는 적합성확인을 받은 날부터 3년
중간처분업	최초 적합성 확인은 이 영이 시행된 날부터 5년, 이후부터는 적합성확인을 받은 날부터 5년
최종처분업	
종합처분업	
중간재활용업	
최종재활용업	
종합재활용업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적합성확인 유효기간 동안 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하며, 과태료 부과처분은 제외한다)을 받거나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적합성확인 유효기간을 2년 간 연장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에도 불구하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검토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토를 받아야 하는 날을 적합성확인 유효기간의 만료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u>제10조의2(적합성 확인 유효기간)</u> <u>법 제2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u> <u>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u> <u>는 업종별 적합성확인 유효기</u> <u>간”이란 별표 5의3과 같다.</u>
<신 설>	<u>제10조의3(의료폐기물 처리에 관</u> <u>한 특례 적용범위)</u> <u>법 제25조</u> <u>의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u> <u>의료폐기물”이란 별표 2 제3호</u> <u>의 일반의료폐기물을 말한다.</u>
<신 설>	<u>제10조의4(결격 사유)</u> <u>법 제26조</u> <u>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u> <u>는 벌금형”이란 1천만원 이상의</u> <u>벌금형을 말한다.</u>
제11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 별 과징금의 금액 등) <신 설>	제11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 별 과징금의 금액 등) ① <u>법 제2</u> <u>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u> <u>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해당</u> <u>폐기물처리업자의 영업정지 대</u> <u>상인 폐기물처리업의 직전 3개</u> <u>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을 말</u> <u>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 초일</u> <u>현재 사업을 시작한지 3년이 되</u> <u>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업 시작</u>

<신 설>

① · ② (생 략)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사업장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횡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

후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며,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위반행위를 한 날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영업을 중단하는 등의 사유로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2. 재해 등으로 인하여 매출액 산정자료가 소멸되거나 훼손되어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③ · ④ (현행 제1항 및 제2항과 같음)

④ -----

----- 법 제28
조제1항-----

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신 설>

----. -----
-----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
-----.

제23조의5(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
의 구성·운영) ① 법 제48조
의3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자
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
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은 폐기물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환경부
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폐기물 관련 업무에 10년 이
상 종사한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
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변호사로 5년 이상 실무에 종
사한 사람
4. 관계 공무원

5.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
며, 간사는 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위원회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자문사항을 전문적
으로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분
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
으며, 필요한 경우 한국환경공
단에 자문과 관련된 기술적 사
항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
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
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 설>

제23조의6(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의 지정 등) 법 제48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환경공단
2. 그 밖에 폐기물 적정처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신 설>

제23조의7(과징금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8조의5제1항에 따른 부적정처리이익은 부적정처리 폐기물의 양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처리방법별 처리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48조의5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제거 및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은 부적정처리폐기물을 제거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토지 등의 변형을 원상회복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으로 한다. 다만, 법 제48조의5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부적정처리폐기물을 제거하고 원상회복한 경우

<신 설>

제37조(권한의 위임) ①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생 략)

2.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으로

는 제외한다.

③ 법 제48조의5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와 납부 절차에 관하여는 제11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본다.

제35조의2(국고보조의 검토) 환경부장관은 법 제56조에 따른 국고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에 기술적 사항에 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제37조(권한의 위임) ①-----

-----.

1. (현행과 같음)

2. -----

한정한다)외에서 배출하는 지정폐기물, 「의료법」 제3조 제2항제3호마목의 종합병원(이하 “종합병원”이라 한다)이 아닌 기관에서 배출하는 의료폐기물, 법 제1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동으로 수집·운반하는 지정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 아. (생략)

자. 법 제48조에 따른 조치명령

차. 법 제49조에 따른 대집행(代執行) 및 비용징수

<신설>

3.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광역 폐기물처리시설로서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둘 이상의 시·도의 시

가. ~ 아. (현행과 같음)

자. 법 제48조제1항-----

차. 법 제48조의5에 따른 과징금 처분

카. 법 제4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집행(代執行) 및 비용징수

3. -----

· 군·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시설, 시·도가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 및 종합병원이 아닌 기관에서 배출하는 의료폐기물 외의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제외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 라. (생략)

마.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에 관한 신고의 수리

4. ~ 6. (생략)

②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1. ~ 1의6. (생략)

2.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나. (생략)

<신설>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신청 및 신고의 접수, 허가, 신고의 수리, 통보

4. ~ 6. (현행과 같음)

②-----

-----.

1. ~ 1의6. (현행과 같음)

2. -----

가.·나. (현행과 같음)

다. 법 제25조의3제1항·제2항·제5항에 따른 확인, 신청의 접수 및 통보, 추가

<신 설> 다. (생 략) 라. (생 략) 마. (생 략) <u>바.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u> <u>폐기물처리업의 권리·의</u> <u>무의 승계에 관한 신고의</u> <u>수리</u> <신 설> 사.·아. (생 략) 자. ~ <u>타.</u> (생 략) <신 설> <신 설> 3. 제1항제3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u>자료 제출 및 필요한 조치</u> <u>의 요구</u> <u>라. 법 제25조의4에 따른 처</u> <u>분</u> 마. (현행 다목과 같음) <u>바.</u> (현행 라목과 같음) 사. (현행 마목과 같음) <u><삭 제></u> <u>아.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5</u> <u>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u> <u>가신청 및 신고의 접수, 허</u> <u>가, 신고의 수리, 통보</u> 자.·차. (현행 사목 및 아목 과 같음) 카. ~ 하. (현행 자목부터 타 목까지와 같음) <u>거. 법 제47조의2에 따른 반</u> <u>입정지명령</u> <u>너. 법 제48조의4제2항에 따</u> <u>른 통보</u> 3. ----- ----- -----
--	--

가. ~ 다. (생략)

라.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에 관한
신고의 수리

4. ~ 6. (생략)

③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환경
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
에게 위임한다.

1. ~ 4. (생략)

<신설>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5
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
가신청 및 신고의 접수, 허
가, 신고의 수리, 통보

4. ~ 6. (현행과 같음)

③ -----

-----.

1. ~ 4. (현행과 같음)

4의2. 법 제30조의2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폐
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
정 및 그 기관에 대한 지정
서 발급

나.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폐
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변
경지정

다. 법 제30조의2제6항에 따른 폐
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정
기점검

라. 법 제30조의2제7항에 따른 폐
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업

	<u>무정지 명령 및 그 지정의 취소</u>
제38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8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환경부장관(제37조에 따라 환경 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시·도지사(해 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 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 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 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 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 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 ----- ----- ----- ----- ----- ----- ----- -----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u>법 제33조제3항에</u> 따른 권리 · 의무 승계 <u>신고</u> 에 관한 사 무	7. <u>법 제33조제1항부터 제5항까 지에 따른 -- 허가 및 신고--</u> --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u>법 제25조의3제1항 및 제2항 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적합 성 확인에 관한 사무</u>

< 의안 소관 부서명 >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7349